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1년 8월호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

2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

나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(온라인 대출대리 · 중개법인의 대부중개업 겸업금지 규제 완화)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(2021/7/12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2021년 4월 발표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및 금소법 시행 후 금융권 애로사항 수렴 결과, 일부 제도보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금융상품판매업의 범위(제2조 제2항)

- 금융상품판매업의 예외로 재보험사의 재보험계약 및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 집행을 위한 대출을 추가로 규정

□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(제14조 제1항)

-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로 법인 집단대출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을 규정
 -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

□ 계약서류의 제공의무(제21조)

- 계약서류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
 - 기본 계약 체결 후 그 계약에 따라 계속적 ·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
 -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
 - 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□ 온라인 대출대리 · 중개법인의 대부중개업 겸업금지 규제를 완화(제22조)

- 현재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,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은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분할로 신설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재상장 신청서류 명확화)
- 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섹터지수선물 추가 상장 및 상위분류 설정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1/7/22 개정 · 2021/7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국내 상장법인의 해외 사업부문 분할 등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위해, 분할로 신설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재상장 신청서류 등을 명확화하고,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을 정비하기 위함
 -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는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국내 영업소 설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을 말함(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20호 다목)
- 기초주권 권리변동 발생시 주식워런트증권(ELW) 가치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ELW 발행조건 변경기준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분할로 신설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재상장 신청서류 명확화(별표 1, 별표 4)
 - 국내 상장법인의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재상장 신청시 신규상장에 준하는 제출서류를 명시
 - 변호사 의견서(상장신청서 등의 내용이 진실함을 인증) 및 감사인 확인서 등
-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자회사 요건 정비(제4조)
 -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국내 자회사가 주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로 인정
 - 주요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큰 순서대로 더한 금액이 그 장부가액 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말함
 - 다만,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자산구성 내역과 외국기업 및 국내법인의 주식가액 변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회사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로 간주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ELW의 발행조건 변경방법 산식 개선(별표 9)

- 기초주권 자본감소시 주권의 기준가격 및 직전일은 각각 주권 변경상장일 익일의 기준가격 및 변경상장일 전일의 증가로 함
- 오류 방지를 위해 전환비율 계산식을 변경함
- 기초주권의 회사분할시 주당 액면금액 변경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을 조정함

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7/13 개정 · 2021/7/19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섹터지수선물 및 ETF선물을 추가 상장하여 K-뉴딜 및 해외지수상품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,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및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
- 미국달러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(유렉스 연계거래) 도입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 제공 및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- 장개시전협의거래(유렉스 연계거래)에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참여를 허용하고, 유렉스 연계선물 거래의 당사자가 장개시전협의거래 참여자와 동일인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가) 섹터지수선물 추가 상장 및 상위분류 설정(제4조의7, 제4조의9, 제46조, 제75조, 별표1의3, 별표6, 별표7, 별표19, 별표19의2)

- K-뉴딜 관련 지수에 대한 투자수요 및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섹터지수선물 3개 상품을 추가로 상장
 - KRX BBIG K-뉴딜, KRX 2차전지 K-뉴딜, KRX 바이오 K-뉴딜의 3개 기초자산을 추가
 - 추가 상장 이후 섹터지수선물의 기초자산은 총 15개(현행 12개 + 추가 3개)
 - K-뉴딜 지수의 수준 및 변동성 등 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승수는 1,000으로, 호가가격단위는 0.5포인트로 하고, 결제월의 수는 분기월 4개, 거래기간은 1년으로 정함
 -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의 CB(Circuit Breakers) 발동을 기준으로 K-뉴딜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, 재개, 종결을 적용

1) 제72조의9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

K-뉴딜지수선물 기타 주요내용

구분	K-뉴딜지수선물	조문
기초지수	KRX K-뉴딜지수 중 3개 (BBIG, 2차전지, 바이오)	별표 1의3
거래승수	1,000	
호가가격단위	0.5포인트	제4조의9
결제월	분기월물 4개 (거래기간 1년)	제4조의7
선물스프레드 종목 수	3개	제46조
호가가격제한	8%, 15%, 20%	기존 섹터지수선물과 동일
호가수량한도	1,000계약	
미결제약정수량 한도	10,000계약	
최종거래일	분기월 두 번째 목요일	
최종결제가격	최종거래일 지수 증가	
최종결제방법	현금결제(차액정산)	

K-뉴딜지수선물 신규상장(2021. 7. 19. 신규상장시)

결제월 상품	2021						2022						2023		결제월 수				
	7	8	9	10	11	12	1	2	3	4	5	6	~	9		~	12	~	12
K-뉴딜 지수선물			●			●			●			●							4개
기존 섹터 지수선물			○			○			○			○		○		○		○	7개

□ 섹터지수 파생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기초자산을 해당 지수의 계열 특성을 반영한 상위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

- 지수구분상 KOSPI 계열 지수는 ‘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거래’로, 그 외 지수는 각 테마의 특성을 반영하여 ‘코스피배당지수선물거래’, ‘KRX K-뉴딜지수선물거래’로 분류
- 상위분류에 따른 섹터지수 기초자산별 상품의 세척상 용어 정비

섹터지수선물거래 기초자산의 구분

개정 전	개정 후	
기초자산	구 분	기초자산
코스피200 에너지/화학	코스피200 섹터지수 선물거래	코스피200 에너지/화학
코스피200 정보기술		코스피200 정보기술
코스피200 금융		코스피200 금융
코스피200 경기소비재		코스피200 경기소비재
코스피200 건설		코스피200 건설
코스피200 중공업		코스피200 중공업
코스피200 헬스케어		코스피200 헬스케어
코스피200 생활소비재		코스피200 생활소비재
코스피200 철강/소재		코스피200 철강/소재
코스피200 산업재		코스피200 산업재
코스피고배당50	코스피 배당지수 선물거래	코스피고배당50
코스피배당성장50		코스피배당성장50
KRX BBIG K-뉴딜	KRX K-뉴딜지수 선물거래	KRX BBIG K-뉴딜
KRX 2차전지 K-뉴딜		KRX 2차전지 K-뉴딜
KRX 바이오 K-뉴딜		KRX 바이오 K-뉴딜

나) 신규 ETF선물 추가상장(별표1의4 및 별표6)

□ 해외지수에 대한 투자수요 및 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해 ETF선물 추가상장

- 신규상장 대상 기초 ETF는 ‘TIGER 미국나스닥100 ETF(미래에셋 투자신탁)’으로 하며, ETF 시장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설정
 - 현행 ETF선물거래의 기초 ETF: KODEX 삼성그룹 ETF, TIGER 헬스케어 ETF, ARIRANG 고배당주 ETF, TIGER 차이나CSI300 ETF, KODEX Top5PlusTR ETF

다) 미국달러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(유렉스 연계거래) 도입(제72조의9 제4호)

□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이 상장됨에 따라 미국달러선물을 장개시전협의거래 대상상품으로 추가

- KRX 상장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렉스 연계선물거래(1일물)의 최종결제를 위하여 장개시전협의거래 방식으로 유렉스 시장의 미결제약정을 KRX 시장으로 이전

라) 장개시전협의거래에 외국인 통합계좌 참여 허용(제67조의3 등)

- 장개시전협의거래에 외국인 통합계좌 참여 금지규정 삭제(제67조의3 제2항 제5호)
- 유렉스청산기관은 회원이 외국인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에게 부여한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를 기재한 장개시전협의 거래신청 예상내역을 통지(제72조의11 제2항 제6호)
- 회원은 장개시전협의거래 신청 시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를 파생상품계좌번호 대신 입력(제72조의12 제6호)
-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주문 수탁시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를 확인(제118조의2 제1항 제4호)
- 유렉스 선물거래의 당사자가 장개시전협의거래 참여자와 동일인임을 명확히 함(제118조의2 제2항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
(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마련)
- 나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(증권금융의 적격청약 여부 판단기준 추가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1/7/30 제정 · 시행)

1) 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법령(법 제16조, 시행령 제10조)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마련 · 제정하기 위함
 -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2) 주요 내용

가)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
- 이사회(제6조)
 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·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마련
 -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, 내부통제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· 의결
- 대표이사(제7조)
 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, 준수여부 점검, 위반시 조치방안 및 기준 마련 등
 - 다만,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 가능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	구성	역할
1	이사회	• 내부통제체계 구축/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마련
2	대표이사	• 내부통제체계 구축/운영에 관한 세부방안/기준 마련, 인적/물적 지원
3	내부통제위원회	•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사항, 개발/판매/사후관리 협의사항 의결
4	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	• 총괄기관 업무 통할 • 금융소비자보호 제도/기준 수립 및 개발/판매/사후관리 관련 관리·감독
5	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	•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담당부서 사전협의 및 개발/판매/사후관리 관련 모니터링 등

나)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

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(제9조)

-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
- 대표이사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, 사내임원,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(제9조 제2항)
 - 대표자,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, 기타 사내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(금소법 감독규정 <별표2> 3.가.2))
 - 법령 등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 등도 포함
-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(제9조 제4항)
 - 대표이사는 최소 연 2회 내부통제위원회 참석 필요
- 내부통제위원회 회의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논의사항은 서면·녹취 등 방식으로 5년간 기록·유지(제9조 제5항)
 - 금소법 시행령(제26조 제1항 제5호, 제2항 제2호), 감독규정(제25조 제1항)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5년간 기록·유지
- (조정·의결사항) 금소법 감독규정(<별표2> 3.가.1))에서 규정한 조정·의결사항 이외 일부 사항을 추가(제9조 제3항)

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(제10조)

-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·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
- (독립성 확보) 대표이사 직속기관(제10조 제2항)
- (업무·권한) 금소법 감독규정(<별표2> 3.나.1))에서 규정한 수행하는 업무 이외 일부 사항을 추가(제11조)
- (업무담당자 자격요건)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담당직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

- 입사 후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품개발 · 지원 · 영업 · 서비스기획, 법무 · 시스템 · 통계 · 감사 등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자(제14조 제2항)
- (준법감시부서와 관계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담당
 - 조직 · 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서도 담당 가능(제10조 제4항)

□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(제12조)

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(Chief Consumer Officer)
- (결격요건) 금융당국의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 불가(제12조 제3항)
 -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
- (보고)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발생 또는 현저한 우려 발생 시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(제13조 제2항)
- (독립성 확보)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· 급여기준을 마련 · 운영(제15조)
 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공통 적용

다) 임직원등의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

□ (업무단계별 준수사항) 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업무절차 구축(제22조)

- (부서간 사전협의) 신규 금융상품 개발, 마케팅 및 판매절차 등에 대한 개발 · 변경 정책수립 시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(제18조 제2항)
- (상품개발 점검항목)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신상품 개발시 소비자 리스크 진단을 위한 점검항목을 마련(제19조 제1항)
- (금융소비자 의견청취) 신상품 개발시부터 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마련 · 운영(제20조 제1항)
- (판매절차 구축) 상품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판매 前 · 後 절차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(제21조)
- (사후관리 정책) 금융상품판매 이후에도 상품내용 변경 또는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함(제22조 제2항)

□ 영업행위 준수사항

- (일반원칙) 금융상품판매 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(제24조 제1항)
- (금융소비자 이해상충 방지)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(제25조)
 -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고 목적 이외에는 사용 금지(제27조)

□ 업무위탁시 준수사항

- (계약내용) 위탁계약 체결시 위탁범위(취급상품, 투자권유 한정 등), 계약해지사유, 금지행위 등 명확히 규정(제28조 제2항)
- (대리·중개업자에 대한 관리) 판매대리·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, 위탁계약의 체결·해지 절차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(제28조 제3항)
 - 수수료 감액, 벌점부과, 계약해지 등 대리·중개업자의 관련법령 위반 시 불이익사항을 위탁계약서에 반영(제28조 제4항)
- (금융상품자문업무의 보수)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수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류에 명시(제29조)

라)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

- (점검)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 주기적 점검(제30조 제1항)
 - 각 조직단위 장에게 위반여부 점검 위임 가능(제30조 제2항)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(제30조 제3항)
- (조치)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정도,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(제30조 제4항)
 - 필요시 준법지원, 감사 부서 등에 의뢰 가능
- (평가)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(내부통제위원회 없는 경우 대표이사)에 보고(제30조 제6항)
 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위법·위규 행위 발견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(제31조 제2항)

마) 금융상품 판매직원 대상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

- (판매담당 직원 교육 등) 판매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상품의 위험도·복잡성 등 상품 내용 관련 교육 실시(제32조 제2항)
 - 판매 담당직원의 관련법규 등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 마련(제33조 제3항)

바) 업무수행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

- (일반원칙) 판매임직원의 성과평과시 소비자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성과보상체계 설계·운영(제34조 제1항)

- (성과보상체계) 판매임직원의 성과평과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(불완전판매건수, 고객수익률,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)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되도록 성과평가지표(KPI)를 운영(제34조 제2항)
 - 특정상품의 판매실적을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없음(제34조 제3항)
- (성과보상체계 수립절차)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(제36조 제2항)
 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KPI 조정 등 검토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(내부통제위원회 없는 경우 대표이사)에 보고(제36조 제3항)

사) 내부통제기준의 제정·변경 절차

- (제정·변경)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 사항(제37조 제2항)
 - 다만, 법령 제·개정, 이사회 의결사항의 후속조치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 승인 가능(제37조 제2항)
- 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협의) 내부통제기준의 제정·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
 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·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결과 보고(제37조 제3항)
- (게시방법) 내부통제기준 제·개정 사실 및 그 이유,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,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 주요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(제37조 제4항)
- (안내·교육) 내부통제기준 제·개정 사실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고, 필요시 교육(제37조 제5항)

아) 고령자 및 장애인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

- (고령자) 고령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토록 함(제38조)
- (장애인)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비대면 거래(모바일·인터넷 등)를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고(제39조)
 - 고령금융소비자 및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및 재산상 피해방지를 위한 세부사항 별도로 정할 수 있음(제38조 제5항, 제39조 제5항)

나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(2021/7/20 개정 · 2021/7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중복청약 관련 정교한 업무처리를 위해 증권금융의 적격청약 여부 판단기준을 추가하기 위함
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21. 6. 20)에 따라 IPO시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금지와 관련하여 본회는 증권사 및 증권금융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시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(기존)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발생시 증권금융은 3가지의 판단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격청약 여부를 판단
 - ① 시간 순, ② 청약자의 청약금액 큰 순, ③ 청약건수 작은 인수회사 순
- (개정)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격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증권신고서 상 기재된 인수인 순으로 우선한 청약을 적격 청약으로 간주하도록 기준 추가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